

의안번호	2216463
의 퇴 인	최은석의원
회 답 일	2026. 5. 8.
추계번호	26D05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 동안 4,300만원(연평균 9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안 제66조의14 신설)	43	-	-	-	-	43	9

주: 1.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2.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안 제66조의14 신설)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3. 개정안에 따라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2027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를 활용하여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6조의14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66조의15 (물놀이구역의 지정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계곡, 하천, 댐, 등 물놀이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6조의14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	-
2	안 제66조의15 (물놀이구역의 지정 등)	X	시·도지사 등이 지정할 물놀이구역의 수, 지정 시 안내표지판 등의 수량 및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안 제66조의14(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한하여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가 기존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에서 고려하지 않기로 함
- 소비자물가상승률¹⁾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2026.3.)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
소비자물가상승률	3.6%	2.3%	2.1%	2.3%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
-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해양경찰청의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를 활용하여 2027년에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해양경찰청은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사례는 2024년으로 당시 정책연구용역비용은 4,000만원
 - 본 추계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유사사례 비용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
- 추계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43	—	—	—	—	4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